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10. 25 선고 2023가단37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

담당변호사 이재웅

변 론 종 결 2023. 10. 11.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거창군 B 하천 251㎡, C 하천 307㎡, D 하천 83㎡ 토지(이하 '원고 소유의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국유재산인 경남 거창군 E 하천 2,5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분에 관한 '하천점사용료'를 납부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위 토지 중 일부분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다. 피고 산하의 F공사는 2022. 7. 11. 이 사건 토지 중 농경지 부분 1,150㎡에 관한 대부계약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소외 G이 입찰절차를 통하여 2022. 8.경 피고와 위 토지 부분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래 원고 소유의 토지들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는데, 수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들이 하천과 길이 되었다. 그 후 원고의 누나가 원고 소유의 토지들 인근의 하천이던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여 농경지로 조성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0년경까지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원고가 2010년경 이를 이어받아 2021년경까지 농사를 지었다. 원고의 누나가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여 농경지로 조성함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가 현존하고 있고, 원고는 원고의 누나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농경지 부분(1,150㎡)에 대하여 3.3㎡당 조성비용 100,000원으로 계산한 유익비 34,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농경지 부분을 원고의 누나가 조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한데, 설령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양수받았음을 알 수 있는 뚜렷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원고는 막연하게 ‘누나가 오랜 기간 농사를 지어왔고, 누나로부터 농지조성 및 경작자 지위를 양수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농경지 부분에 관한 점유의 승계가 있었다고 하여 별도의 법률관계인 유익비상환청구권까지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총 5년 동안 위 농경지 부분에 관한 ‘하천점사용료’를 납부하였는데, 국유재산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일반재산 중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대부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 등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농경지 부분의 대부계약 입찰절차에 참가하였다가, ‘서류제출미비’를 이유로 입찰이 무효로 되었고, 그 이후 피고 산하의 F공사에 ‘기존 대부계약에 따라 사용하던 사람을 내쫓고, 다른 사람이 낙찰받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입찰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에서 본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의 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0년경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민법 제450조 제1항), 이러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양도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여겨진다.

4) 원고는 2023. 10. 16.자 변론재개신청서를 통하여 ‘원고의 누나가 실제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면서 자신의 조카인 H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① 위 확인서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3. 10. 12. 작성된 것으로, 그 경위 자체에 상당한 의문이 들고, ② 그

기재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③ 거기에 기재된 ‘원고에게 2015. 4. 20.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양도계약의 시점과는 서로 다른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5) 원고의 청구원인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예비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민법 제203조 제2항, 제1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누나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이력 자체가 분명하지 않고, 설령 원고의 누나가 2010년경까지 점유하다가 이를 원고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에 대한 반환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유를 취득하는 과정을 단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2010년경 이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5년이고, 이 사건 소가 2023. 4.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선